



국적선의 MLC 이행을 위한 선사 준비사항

2013. 5. 29

한국선급 조항제



협약의 발효 시기

- ❖ **2012. 8. 20일 : 30개국 비준 조건 충족 (파나마, 라이베리아, 마셜아일랜드, 싱가포르, 러시아, 필리핀, 호주, 캐나다 등 31개국)**
 - ✓ 현재 **39개국** 비준
 - ✓ 일본: **2013.6** 비준 예정
 - ✓ 중국: **2014년** 비준 예정

- ❖ **2013. 8. 20일 : 협약의 최초 발효 (31개국에서 발효)**

- ❖ **31개국 이외의 국가는?**
 - ✓ 각국이 비준한 날로부터 **12개월** 후 발효
 - ✓ 국적선에 대한 발효(적용) 시기 미정!

- **PSC Inspection**

- ❖ **Article V, para 4** : 기국이 아닌 회원국도 해당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있을 때 이 협약의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제법에 따라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선박을 검사할 수 있다. (PSC 검사의 근거 규정)
- ❖ **Article VIII, para 2** : 이 협약은 사무총장에게 비준서가 등록된 회원국만을 구속한다.

- **PSC Inspection**

- ❖ **Article V, para 7** : 각 회원국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이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보다 더 유리한 처우를 받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이 협약에 의한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. (기국의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, **SOLAS**와 같은 개념)

ILO 결의서 17호 (Resolution XVII)

- ❖ ‘협약 발효 시 해사노동적합증서 발급에 관한 실질적 이행에 관한 결의서’
 - ✓ 각 정부로 하여금 세계 선복량의 **33%**를 가지는 최소 **30개** 회원국이 비준서를 등록한 날 이후 **12개월** 이전에 벌크선과 여객선에 대하여 먼저 증서 발급 요건의 단계적 이행을 확보할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며,
 - ✓ 또한 최초의 협약 발효 후 1년간은, 검사관이 선박이 협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없는 것을 조건으로,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가 없이도 선박이 운항될 수 있도록 기국 및 항만국에게 상당한 고려를 할 것을 요청한다.

- ❖ 동 결의서는 **2012년 8월 20일까지** 협약을 비준한 국가(**31개국**)에만 적용되는 것임!

ILO 결의서 17호 (Resolution XVII)

- ❖ 대한민국의 경우 협약 미비준 (최초 31개국에 포함되지 못함)

- ❖ 예: 2013년 6월 1일에 비준한다면?
 - ✓ 2014년 6월 1일에 대한민국에서 발효
 - ✓ 국내법에서 일부 선종에 대한 증서비치를 유예하더라도 2014년 8월 20일까지는 증서를 비치하여야 함.
 - ✓ 2015년 6월 1일까지 유예는 불가능 (선원법 136조 의거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PSC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임)

- ❖ 예: 2013년 9월 1일에 비준한다면?
 - ✓ 2014년 9월 1일에 대한민국에서 발효
 - ✓ 2014년 9월 1일까지 증서 비치 요구됨

선사의 준비 사항

- 인증주체 결정
 - ❖ 누가 ‘선박소유자’ 역할을 할 것인가?
 - ❖ 선원법 제2조 제2호의 ‘선박소유자’ 정의에 부합하여야 **MLC** 인증의 주체가 될 수 있다.

선사의 준비 사항

- **DMLC의 준비**
 - ❖ 선원법 시행규칙 서식 **26호의 DMLC Part I** 파악
 - ❖ 선원법 시행규칙 서식 **27호에 따라 DMLC Part II** 개발, 작성
 - ✓ 한국선급 홈페이지에 등재된 **DMLC Part II** 표준모델 참조
 - ✓ (주요서비스안내->시스템인증->**MLC Convention**->자료실)

선사의 준비 사항

- 선원근로계약서 양식 개발
 - ❖ 선원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 양식 개발
 - ❖ 선원근로계약서에 ‘선박소유자’ 이외의 자가 서명할 경우
 - ✓ 해외 **Manning Agent** 등이 대리 서명할 경우, 선박소유자가 해당 **Agent**에 서명권을 위임했다는 거증 서류 준비
(**Power of Attorney** 작성, 또는 선원공급계약서 등에 명시)

선사의 준비 사항

- 선내불만처리절차 개발
 - ❖ 협약 규정 **5.1.5** 조에 따른 선내불만처리절차 개발
 - ✓ 부서장->선장->회사 등 단계를 거치도록 하되, 본인이 원하는 경우 외부당국 등에 바로 불만제기 가능토록 보장
 - ✓ 불만제기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 금지
 - ✓ 불만처리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동반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보장
 - ✓ 기국 및 선원거주국의 책임당국 연락처 포함
 - ✓ 불만처리절차 **1부**를 각 선원에게 제공 (선원법: 선내게시)

선사의 준비 사항

- 선원직업소개소(Manning Agent) 검증
 - ❖ **MLC** 미비준국가(미얀마, 인도네시아, 중국)의 선원직업소개소를 통해 선원을 공급받을 경우;
 - ❖ 해당 선원직업소개소가 **MLC** 요건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선박소유자가 확인하여야 함. (선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**56**조의**5**)
 - ✓ 선박소유자의 자체 점검
 - ✓ 대행기관의 **Audit**
 - ✓ 제**3**자 인증기관의 **Audit** 등 다양한 방법 인정

선사의 준비 사항

- 임금명세서(Pay Slip) 준비
 - ❖ 선원에게 임금액수가 기재된 월별 명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.
 - ✓ 이메일로 본선 송부 후 선장이 배부, 또는
 - ✓ 선내 전산망에 각자 **Log-in** 하여 확인
 - ✓ 해외 **Manning Agent**를 통해 외국인선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, 임금명세서 작성/배부 관련 업무 분장

선사의 준비 사항

- 송환보험의 가입
 - ❖ 인증검사 및 **PSC** 대상은 아니나, 협약의 강제사항
 - ❖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 제5조에 따라 ‘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’는 가입 대상임.
 - ✓ 시행시기 미정 ? (시행령 시행일 **or** 협약 발효일)
 - ✓ 국내 상품은 없는 듯...
 - ✓ 일부 **P&I Club**에서 취급

선사의 준비 사항

- 표준의료보고서의 사용
 - ❖ 기존 사 자체 서식의 ‘육상 진료 의뢰서’ 등 사용 불가
 - ❖ 정부 서식 사용 필요함
(선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**25**호의 **2** 서식)

선사의 준비 사항

- 거주설비/오락시설의 점검 & 식량/식수/취사설비의 점검
 - ❖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9조(선내순시)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‘선장이나 선장이 지정하는 사람’은 선원거주설비와 선내급식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주 점검하고, 기록하여야 한다.
 1. 식량과 식수의 공급
 2. 식량과 식수의 저장 및 취급에 사용하는 모든 장소와 설비
 3. 식사를 준비하고 제공하는 취사실 및 기타 설비

선사의 준비 사항

- 선박조리사 자격 확보

- ❖ 선원법 제**76**조제**2**항 : 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를 선박에 승무시켜야 한다. (시행일: 2015.2.6)
- ❖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 제**22**조: 법제**76**조제**2**항의 선박조리사란?
 1. 조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& 선박에서 **1년** 이상 조리 업무
 2. 조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&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이수 & 선박에서 **3개월** 이상 조리업무
 3. **3년** 이상 선박에서 조리업무 &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이수

선사의 준비 사항

- 선박조리사 자격 확보
 - ❖ 조리부원 관련 현행 요건
 - ❖ 선원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: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을 승무시켜야 한다. (2015.2.6 삭제)
 1. 조리사 자격증 소지 & 선박에서 1년 이상 조리업무
 2. 선박에서 2년 이상 조리업무
 3. 기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장관이 인정된 자

선사의 준비 사항

- 선내작업배치표(**Working Arrangement**)의 작성
 - ❖ 선원법 및 하위법령에 반영되지 않았음
 - ❖ 선내 전선원(선장 포함)의 항해 중 및 정박 중 작업일정 & 선원법에 따른 최소휴식시간을 포함하여 작성 및 선내게시
(협약 기준**A2.3.10**)
 - => 기준 **STCW**에 따른 당직계획표(**Watch Schedule**)와 유사
(선원법 제**62**조제**1**항제**1**호 및 규칙 제**40**조의**2**)
 - => 협약상 강제요건이므로 **PSC** 대상이 될 수 있음

선사의 준비 사항

- 근로시간/휴식시간 기록부의 작성
 - ❖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**18**호 서식 ‘선원의 1일 근로시간,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 기록 서류’ 작성
 - ❖ 선장이 작성, 선원 본인에게 사본 제공 (선원법 제**62**조 제**3,4**항)

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www.krs.co.kr